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경PSG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경PSG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rkpsg.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 6. 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7. 3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유경PSG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효력발생일 전에 정정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 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련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 투자 증권 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 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이 15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가 "유경 글로벌 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 약 정 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 6. 9.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펀드코드 : D9803]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경PSG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및 국내외 전환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시장 위험 및 개별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자산의 일부는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460%	0.60%	1.33	1.51	253	411	574	918	1,888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없음	1.860%	1.00%	1.23	1.86	191	391	601	1,053	2,398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1.160%	0.30%	1.33	1.20	172	299	431	709	1,502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없음	1.360%	0.50%	-	1.40	144	292	447	771	1,69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25.02.03. ~ 26.02.02.	최근2년 24.02.03. ~ 26.02.02.	최근3년 23.02.03. ~ 26.02.02.	최근5년 21.02.03. ~ 26.02.02.	설정일 이후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e)(%)	2020-09-17	4.08	7.19	5.61	7.07	7.45
비교지수(%)	2020-09-17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 변동성(%)	2020-09-17	10.82	10.67	10.84	11.26	10.95

(주1) 비교지수 : 해당펀드는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판매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e)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부동산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정혁	1982	책임 운용역	11억	643억	12.96	8.94	12.96	8.94	14년 9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 인프라 집합투자 기구등의 가격변동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박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

	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오후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유경PSG자산운용㈜ (대표번호: 02-2090-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rkpsg.com)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6. 7. 31.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0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kpsg.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kpsg.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D98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98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D9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98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9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98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98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D98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98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98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D98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98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9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98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D981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의 인터넷홈페

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D98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98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D9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98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98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98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98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D98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98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98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D98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98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98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98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D981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20.09.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 최초 설정
2020.11.	책임 운용역 변경, 부책임 추가
2021.01.	책임 운용역 변경
2021.0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개정
2022.0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06.	책임 운용역 변경
2022.12.	무등급 외화채권 신용등급 적용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사항 반영
2023.0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개정
2023.03.	책임 운용역 변경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3.08.	펀드명칭 변경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문구 정비 (모투자신탁) 외화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명시
2024.03.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개정
2025.0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개정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2026.0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6.07.	펀드 명칭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저축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유경PSG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7층(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대표전화: 02-2090-33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박정혁	1982	책임 운용역	14년 9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Active Fixed Income Team - 킹슬리자산운용 투자운용부 - 유경PSG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 2026. 6. 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부동산재간접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정혁	1982	책임 운용역	11개	643억	12.96	8.94	12.96	8.94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1개 / 2억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이재황	2022.06.15. ~ 2023.03.30.	
박정혁	2023.03.31. ~ 현재	책임운용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6. 6. 9.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박정혁	1982	책임 운용역	14년 9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Active Fixed Income Team - 킹슬리자산운용 투자운용부 - 유경PSG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 6. 9.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부동산재간접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정혁	1982	책임 운용역	11개	643억	12.96	8.94	12.96	8.94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1개 / 2억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이재황	2022.06.15. ~ 2023.03.30.	
박정혁	2023.03.31. ~ 현재	책임운용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부동산,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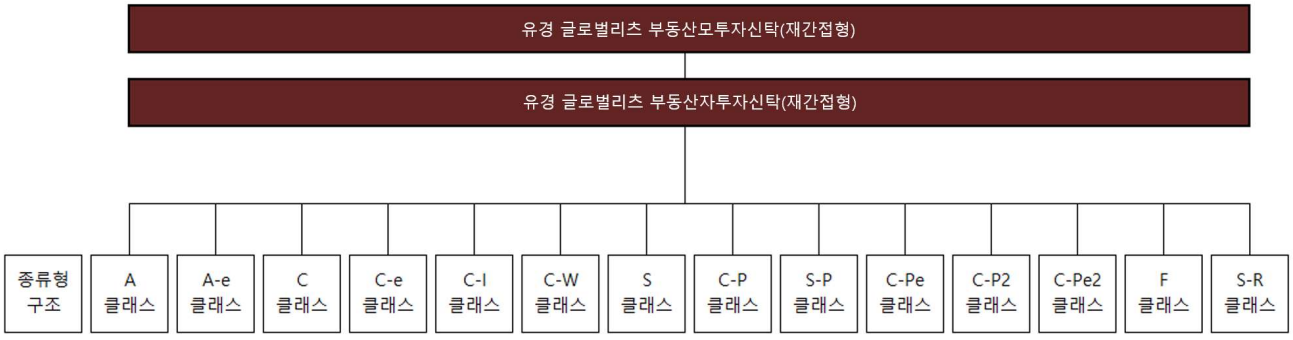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80% 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 (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자산의 일부는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
	투자목적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국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안정적 인컴 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자산의 일부는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편입 자산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의 펀더멘탈, 시장상황, 환헤지 비용 및 해지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부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80% 이상	1) 배당성향이 높고 우량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 현금흐름과 자본차익 추구. 2) 단일 투자처가 아닌 부동산, 인프라, 전환사채 시장 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②	유동성자산 등	20%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비율 적용예외>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및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②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등급이 BBB-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상태를 갖추어야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하고, 주식관련사채권은 포함한다)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상기 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취득 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 3개사가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의 가장 낮은 값이 BBB- 이상인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어음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

			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50% 미만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⑧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	유동성자산 등	20% 미만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단,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 단기대출 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외국에서의 금융기관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상기의 투자대상 중 ①~⑤의 투자한도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⑤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최초설정일로

	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①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①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 (법 제	최초설정일로부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터 1개월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①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비교지수: 해당펀드는 비교지수(B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전환 사채에 분산 투자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성과를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유경PSG자산운용 홈페이지(www.rkpsg.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①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배당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이상 투자하며 자산의 일부는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전환사채에 분산투자
② Top-down 및 Bottom-up 분석을 모두 아우르며 포트폴리오 비중 적극 조절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등 (REITs 포함)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을 말함
②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등급이 BBB-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재무상태를 갖추어야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하고, 주식관련사채권은 포함한다)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상기 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u>취득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 3개사가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의 가장 낮은 값이 BBB- 이상인 것</u>)(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어음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⑦ 기타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단,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다. 단기대출 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3)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만 편입 자산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통화의 펀더멘탈, 시장상황, 환헤지 비용 및 해지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부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란?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자산별 가격변동, 시장의 주요 이벤트 등을 모니터링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 위배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다.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50% 초과) 및 자산의 일부를 (약 30% 이내)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전환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50% 초과)과 인프라 관련 자산 및 글로벌 전환사채(약 30% 이하)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성장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포함)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국가, 주식시장 등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

	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생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즉, 모펀드 이전)될 예정이며,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i) 임의해지 하거나 (ii) 소규모 펀드 합병 방식 또는 모펀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거나 동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될 예정입니다.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 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

	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없는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의 특성상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지역)	이 투자신탁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기구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제한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상장 리츠 및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투자 가능한 종목 수 및 유동성이 제한적인 경우 해외상장 리츠 등의 편입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해외 상장 자산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원본액이 15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이 변경되어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및 이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이 등록된 국가의 휴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 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 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작성시점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작성시점 당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투자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6등급 중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다소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동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높은위험

(2) 등급분류기준

-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은 최소 6단계(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다소 높은 위험(3등급), 보통 위험(4등급), 낮은 위험(5등급), 매우 낮은 위험(6등급)로 구분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이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23.5427%** 수준이므로 유경PSG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4.03.	2등급(높은위험)	3등급(다소높은위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반영

< 유경PSG자산운용의 투자위험 등급 기준>

(1) 투자대상자산을 고려한 투자위험 등급기준

: 신규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 및 비중 향후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부여합니다.

위험등급	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미만 보존 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사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최대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의 80% 이상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보존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가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가지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 주식, 원자재,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관련된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2) 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기준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해당 결산일 이전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구조의 펀드(ELF,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 펀드 등)는 이를 감안하여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상기 위험등급 산정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유경PSG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산정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 입 자 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가입제한은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1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클래스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 전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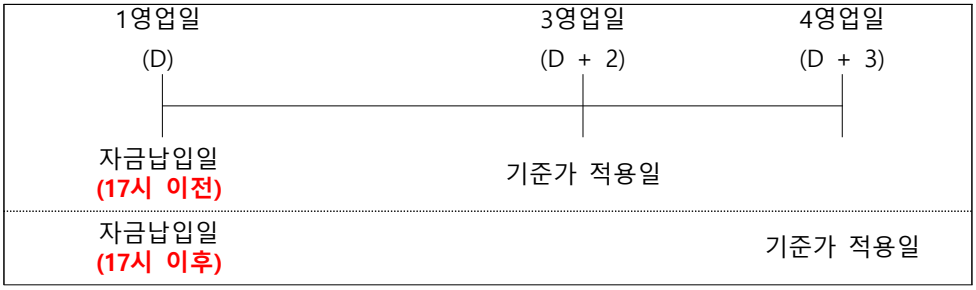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4) 판매수수료

(가) 선취판매수수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1% 이내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 :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의 0.5% 이내

(나) 후취판매수수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익증권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나. 환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관련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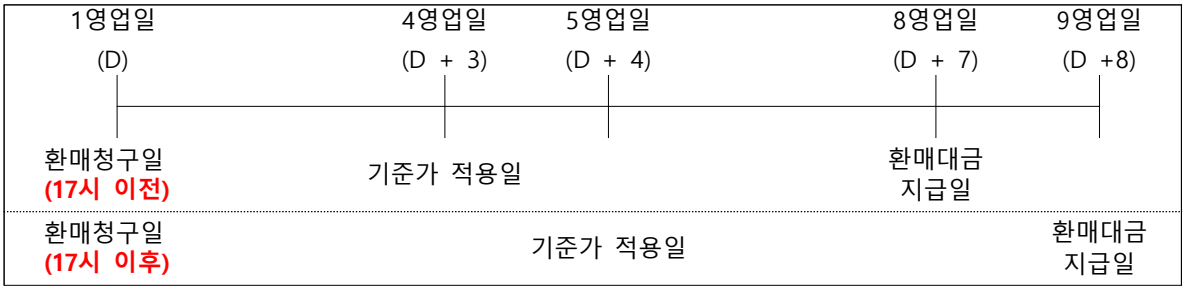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

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써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rkpsg.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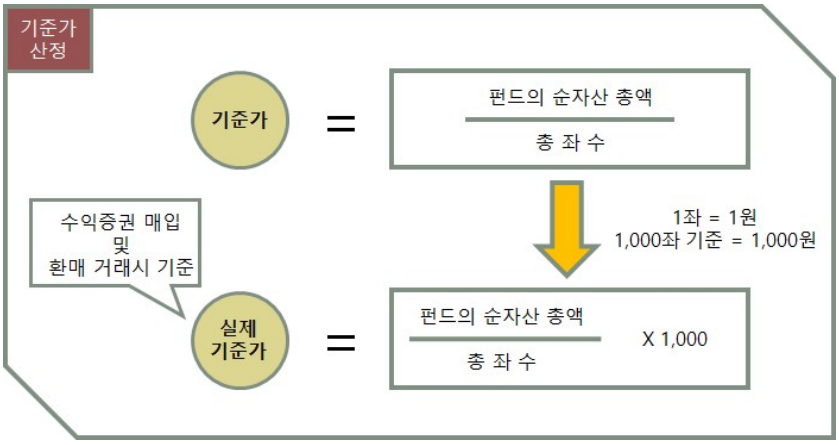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1)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

	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 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사장, 운용담당본부장, 준법감시인, 운용 및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종류)	지급비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이내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8000	0.6000	0.0300	0.0300	1.4600	0.0001	1.4601	1.3300	1.5052	0.188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8000	0.3000	0.0300	0.0300	1.1600	0.0003	1.1603	1.3300	1.1984	0.18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8000	1.0000	0.0300	0.0300	1.8600	-	1.8600	1.2300	1.86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8000	0.5000	0.0300	0.0300	1.3600	0.0000	1.3600	-	1.4016	0.18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8000	0.0700	0.0300	0.0300	0.9300	-	0.9300	-	0.93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8000	0.0000	0.0300	0.0300	0.8600	0.0003	0.8603	-	0.8946	0.17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0.8000	0.0500	0.0300	0.0300	0.9100	0.0000	0.9100	-	0.9528	0.183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8000	0.2500	0.0300	0.0300	1.1100	0.0003	1.1103	-	1.1490	0.17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8000	0.2000	0.0300	0.0300	1.0600	0.0005	1.0605	-	1.0913	0.18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8000	0.1500	0.0300	0.0300	1.0100	0.0000	1.0100	-	1.0471	0.18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8000	0.6800	0.0300	0.0300	1.5400	0.0000	1.5400	1.6500	1.5829	0.18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8000	0.3400	0.0300	0.0300	1.2000	0.0004	1.2004	1.6500	1.2340	0.18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8000	0.6500	0.0300	0.0300	1.5100	0.0000	1.5100	-	1.5518	0.18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0.8000	0.3300	0.0300	0.0300	1.1900	0.0004	1.1904	-	1.2266	0.1887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 2025.01.01.~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39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엑,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 2025.01.01.~2025.12.31.]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21,748

(주3)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8	402	560	895	1,8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3	411	574	918	1,888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8	291	419	689	1,4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2	299	431	709	1,5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1	391	601	1,053	2,39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1	391	601	1,053	2,3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4	433	749	1,6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4	292	447	771	1,6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5	301	527	1,1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5	195	301	527	1,1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8	180	276	479	1,0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2	187	286	497	1,1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3	190	291	506	1,1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	199	305	529	1,17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232	355	615	1,3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8	240	367	636	1,4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222	339	588	1,3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228	349	604	1,3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211	323	560	1,2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7	219	335	580	1,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8	321	490	845	1,84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2	330	503	868	1,8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1	383	663	1,4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8	394	681	1,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315	481	829	1,8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9	324	494	851	1,8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249	380	658	1,4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6	391	677	1,492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① 기대 효과: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 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과세시점 이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통하여 과세시점을 확정한 후 수익증권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은 각 판매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 판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최대 600만원)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는 2023.01.01. 이후 납입 분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 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분리과세)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가능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 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23.01.0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제한도는 2023.01.01. 이후 납입 분 기준)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자본시장법」제229조제2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25.01.01. - 2025.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기(2024.01.01. - 202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기(2023.01.01. - 2023.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25.12.31.)	**(2024.12.31.)**	**(2023.12.31.)**
운용자산	5,894,488,678	14,846,827,030	17,242,665,001
증권	5,894,488,678	14,846,827,030	17,242,665,00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8,761,927	773,868,306	1,433,796,702
자산총계	6,123,250,605	15,620,695,336	18,676,461,70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02,331	102,650,473	355,301,864
부채총계	2,602,331	102,650,473	355,301,864
원본	4,651,509,897	11,896,128,318	14,655,059,312
수익조정금	-694,801,049	-142,687,306	-109,778,511
이익잉여금	2,163,939,426	3,764,603,851	3,775,879,038
자본총계	6,120,648,274	15,518,044,863	18,321,159,839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기 (2025.01.01. - 2025.12.31.)	제 5기 (2024.01.01. - 2024.12.31.)	제 4기 (2023.01.01. - 2023.12.31.)
운용수익	639,947,481	1,656,738,037	1,836,422,121
이자수익	430,484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39,516,997	1,656,738,037	1,836,422,12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639,947,481	1,656,738,037	1,836,422,12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통합재무상태표 및 통합손익계산서

[단위: 원]

통 합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단위:원]

과 목	제6기(2025.01.01-2025.12.31) 금 액		제5기(2024.01.01-2024.12.31) 금 액		제4기(2023.01.01-2023.12.31)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30,484				
1. 이 자 수 익	430,484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478,719,319		2,133,360,746		2,312,921,2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68,660,785		741,220,03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478,719,319		1,564,699,961		1,571,701,24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39,202,322		476,622,709		476,499,154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340,597,161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498,605,161		476,622,709		476,499,154	
운 용 비 용		133,360,301		179,512,658		203,786,268
1. 운용수수료	94,689,006		128,221,023		140,258,317	
2. 판매수수료	31,534,425		41,616,183		52,856,837	
3. 수탁수수료	3,548,890		4,806,381		5,257,77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3,587,980		4,869,071		5,413,33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06,587,180		1,477,225,379		1,632,635,853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0705004		0.122441849		0.108978778

통 합 재 무 상 태 표

투자신탁명 : [단위:원]

과 목	제6기(2025.12.31) 금 액		제5기(2024.12.31) 금 액		제4기(2023.12.31)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894,488,678		14,846,827,030		17,242,665,001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5,894,488,678		14,846,827,030		17,242,665,001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31,364,258		876,518,779		1,789,098,56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31,364,258		876,518,779		1,789,098,566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6,125,852,936		15,723,345,809		19,031,763,567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0,742,825		218,401,816		726,494,90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5,202,682		205,237,560		710,327,843	
4. 수수료미지급금	5,540,143		13,164,256		16,167,065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0,742,825		218,401,816		726,494,908
자 본						
1. 원 본	4,732,246,506		12,064,709,795		14,981,227,31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382,863,605		3,440,234,198		3,324,041,341	
(발행좌수 당기: 4,732,246,506 좌	이익잉여금	2,116,247,581		3,498,724,698		3,451,165,684
전기: 12,064,709,795 좌	수익조정금	-733,383,976		-58,490,500		-127,124,343
전전기: 14,981,227,318 좌)						
(기준가격 당기: 1,267.19 원						
전기: 1,248.04 원						
전전기: 1,176.57 원)						
자 본 총 계		6,115,110,111		15,504,943,993		18,305,268,65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125,852,936		15,723,345,809		19,031,763,56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19	148	26	33	99	126	47	61
2024.01.01. - 2024.12.31.	147	172	55	67	82	101	119	155
2023.01.01. - 2023.12.31.	161	183	46	53	60	71	147	183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551,327좌/57,722,290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6,458,157좌/345,030,769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5,265,713좌/594,480,495원

가. 종류형 펀드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4	5	4	5	2	3	6	7
2024.01.01. - 2024.12.31.	23	26	3	3	22	25	4	5
2023.01.01. - 2023.12.31.	33	35	2	2	11	13	23	27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740,907좌/16,481,118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774,012좌/6,832,965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6,846,396좌/95,716,886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4	18	1	1	8	10	7	9
2024.01.01. - 2024.12.31.	18	21	3	3	6	7	14	19
2023.01.01. - 2023.12.31.	28	32	2	2	12	14	18	22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730,892좌/4,770,352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461,448좌/18,109,199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337,842좌/27,527,215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1.01. - 2024.12.31.	0	0	0	0	0	0	0	0
2023.01.01. - 2023.12.31.	0	0	0	0	0	0	0	0
2022.01.01. - 2022.12.31.	0	0	9	9	9	8	0	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2	2	0	0	1	2	1	1
2024.01.01. - 2024.12.31.	1	1	1	1	1	1	2	2
2023.01.01. - 2023.12.31.	1	2	0	0	1	1	1	1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77,688좌/998,930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539,799좌/4,423,650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826,931좌/3,341,543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8	22	0	1	14	18	4	6
2024.01.01. - 2024.12.31.	20	24	4	5	7	8	18	23
2023.01.01. - 2023.12.31.	26	30	1	1	7	8	20	25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45,247좌/1,989,072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350,730좌/20,443,153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915,831좌/23,470,009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F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2	2	0	0	0	0	2	3
2024.01.01. - 2024.12.31.	2	2	0	0	0	0	2	3
2023.01.01. - 2023.12.31.	2	2	0	0	0	0	2	2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4	17	0	1	7	9	7	10
2024.01.01. - 2024.12.31.	22	26	2	3	10	13	14	18
2023.01.01. - 2023.12.31.	24	27	4	5	6	7	22	27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992,507좌/7,666,633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7,008,938좌/21,320,363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590,311좌/53,709,033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31	38	6	7	31	40	5	7
2024.01.01. - 2024.12.31.	28	33	12	15	10	12	31	39
2023.01.01. - 2023.12.31.	13	15	19	22	4	5	28	35

(주1)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4,331,163좌/129,573,304원
(주2)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4,920,775좌/181,367,300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R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2	2	0	1	1	1	1	1
2024.01.01. - 2024.12.31.	2	2	2	2	2	2	2	2
2023.01.01. - 2023.12.31.	1	2	1	1	0	0	2	2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57,713좌/2,368,101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50,350좌/6,419,344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216,064좌/10,792,656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0	1	0	0	0	0	0	1
2024.01.01. - 2024.12.31.	1	1	0	0	0	0	0	1
2023.01.01. - 2023.12.31.	1	1	0	0	0	0	1	1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43,806좌/1,074,671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58,505좌/1,452,660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231,965좌/3,800,758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3	17	5	6	14	18	4	5
2024.01.01. - 2024.12.31.	11	13	8	10	6	7	13	17
2023.01.01. - 2023.12.31.	12	14	6	7	7	8	11	14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23,520좌/2,093,494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5,427,519좌/56,441,872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6,857,069좌/66,661,499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3	4	0	0	1	2	2	3
2024.01.01. - 2024.12.31.	5	6	0	1	2	2	3	4
2023.01.01. - 2023.12.31.	6	6	0	1	1	2	5	6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21,129좌/4,598,868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489,660좌/10,560,117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855,577좌/25,540,644원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17	22	5	6	14	18	8	10
2024.01.01. - 2024.12.31.	17	20	10	12	10	12	17	22
2023.01.01. - 2023.12.31.	17	19	8	9	8	9	17	21

(주1) 2025.01.01. – 2025.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292,406좌/15,681,051원
(주2) 2024.01.01. – 2024.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5,857,465좌/69,448,142원
(주3) 2023.01.01. - 2023.12.3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7,566,028좌/102,552,952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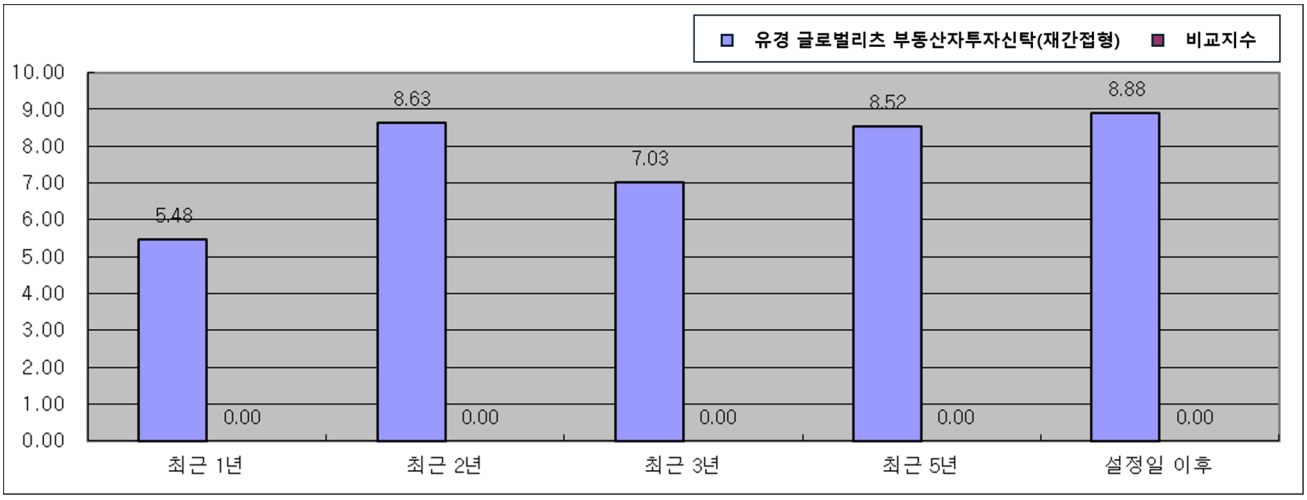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02.03. ~ 26.02.02.	24.02.03. ~ 26.02.02.	23.02.03. ~ 26.02.02.	21.02.03. ~ 26.02.02.	20.09.04. ~ 26.02.02.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5.48	8.63	7.03	8.52	8.8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1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	3.98	7.08	5.50		6.2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31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e	4.29	7.40	5.81	7.28	7.64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1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e	4.08	7.19	5.61	7.07	7.4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5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w	4.59	7.71	6.13	7.60	8.0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1.04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F	4.54	7.66	6.08	7.55	7.9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1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	4.34	7.45	5.87	7.34	7.72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5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P	4.39	7.50	5.92	7.39	7.7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5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R	4.44	7.55	5.97	7.44	7.83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5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	3.90	7.00	5.42	6.95	7.33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1.13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	4.24	7.35	5.77	7.24	7.6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0.95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2	3.93	7.03	5.45	6.92	7.29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1.08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2	4.25	7.36	5.78	7.25	7.7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10.82	10.67	10.84	11.26	11.08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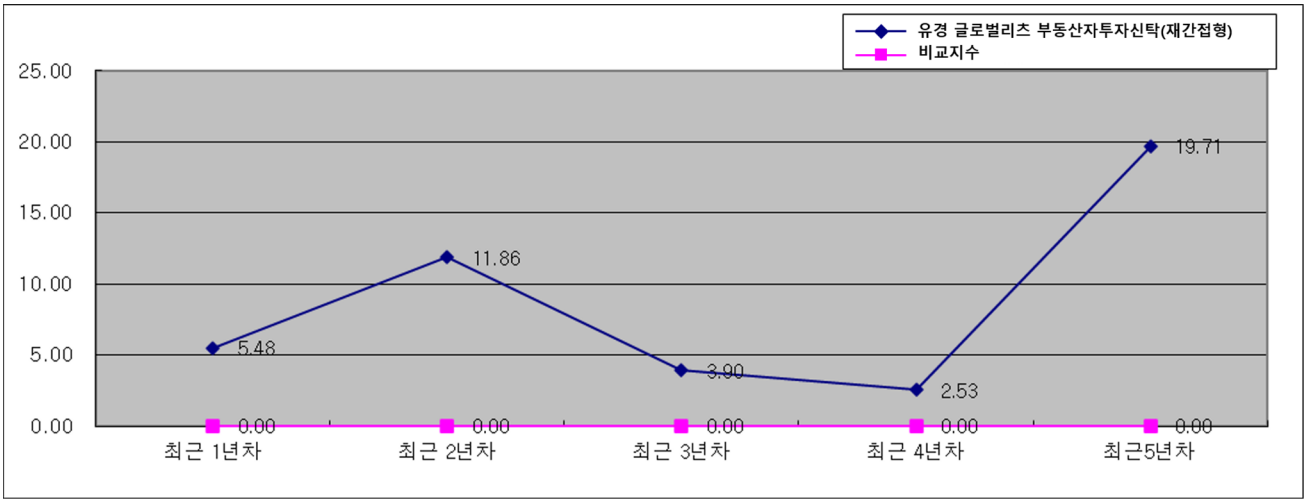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02.03. ~ 26.02.02.	24.02.03. ~ 25.02.02.	23.02.03. ~ 24.02.02.	22.02.03. ~ 23.02.02.	21.02.03. ~ 22.02.02.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5.48	11.86	3.90	2.53	19.7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	3.98	10.27	2.41	1.07	14.4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A-e	4.29	10.59	2.71	1.37	18.3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4.08	10.38	2.51	1.17	18.11

C-e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w	4.59	10.92	3.02	1.67	18.70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F	4.54	10.87	2.97	1.62	18.6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	4.34	10.65	2.77	1.42	18.4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P	4.39	10.70	2.81	1.47	18.47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S-R	4.44	10.76	2.87	1.52	18.53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	3.90	10.18	2.33	0.99	18.25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	4.24	10.55	2.67	1.33	18.30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2	3.93	10.21	2.36	1.02	17.94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유경 글로벌리츠 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Class C-Pe2	4.25	10.56	2.68	1.34	18.3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12.31. 기준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59	0	0	0	0	0	0	2	61
	(0.00)	(0.00)	(0.00)	(96.26)	(0.00)	(0.00)	(0.00)	(0.00)	(0.00)	(0.00)	(3.74)	(100.00)
합계	0	0	0	59	0	0	0	0	0	0	2	61
	(0.00)	(0.00)	(0.00)	(96.26)	(0.00)	(0.00)	(0.00)	(0.00)	(0.00)	(0.00)	(3.74)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12.31. 기준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4	0	0	0	0	0	0	0	0	4	1	19
	(74.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46)	(6.67)	(31.00)
EUR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HKD	1	0	0	0	0	0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
JPY	0	0	0	4	0	0	0	0	0	0	0	4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0)
USD	0	6	0	29	0	0	0	0	0	1	0	37
	(0.00)	(17.67)	(0.00)	(79.17)	(0.00)	(0.00)	(0.00)	(0.00)	(0.00)	(3.16)	(0.00)	(60.00)
합계	16	6	0	33	0	0	0	0	0	5	1	61
	(25.71)	(10.59)	(0.00)	(53.93)	(0.00)	(0.00)	(0.00)	(0.00)	(0.00)	(7.67)	(2.09)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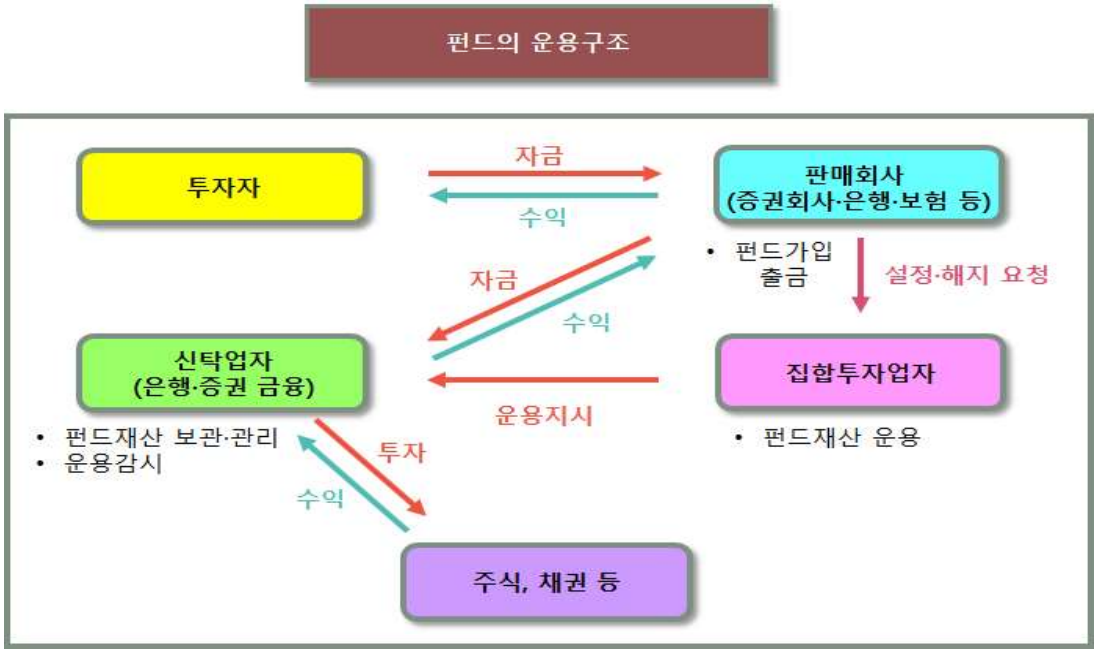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유경PSG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7층(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연락처: 02-2090-3300, http://www.rkpsg.com
회사 연혁	1999.05. 다임인베스트먼트 설립 1999.07. 자산운용사 등록(금융감독원) 1999.10.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2. 타이거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3. 굿앤리치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6.11. 회사이전(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9층) 2007.05. 블리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9.06. 회사이전(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14층) 2009.10. 드림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14.04. 유경PSG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26.01. 회사이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7층)
자 본 금	110억원
주요주주현황	유경산업 외 특수관계인(98.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6기(24'01~24'12)	25기(23'01~23'12)
현금 및 예치금	6,825	18,17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24,788	26,42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500	500
관계기업투자	15,676	11,142
유형자산	457	627
무형자산	-	-
기타자산	833	677
자산총계	**49,079**	**57,546**
예수부채	-	-
차입부채	-	-
기타부채	1,067	7,671
부채총계	**1,067**	**7,671**
자본금	11,026	11,026
자본잉여금	-	-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결손금)	36,985	38,848
자본총계	**48,012**	**49,874**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6기(24'01~24'12)	25기(23'01~23'12)
영업수익	8,240	40,288
영업비용	7,105	22,412
영업이익(손실)	1,135	17,876
영업외수익	708	133
영업외비용	61	230
세전이익(손실)	1,782	17,779
법인세비용	337	3,663
당기순손익	1,444	14,115
포괄손익	1,444	14,115

라. 운용자산규모

[2026. 2. 2.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투자일임기타	총 계
	주식형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2,199	421	55	-	-	1	-	179	1,522	-	-	2,178	314	6,868

*금융투자협회 회사별설정규모 순자산총액+평가액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 02-1588-8000 www.shinhan.com
회사 연혁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빌딩 18~20층) ☎ (02)2180-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연혁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층 TEL: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삼보호정빌딩 9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ONE CENTINEL 15층) TEL:02-3215-1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

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업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

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④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 각호의 사항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가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rkpsg.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등)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 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 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 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목적 :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투자금액 : 2억 원
- 투자대상 수익증권 : 이 투자신탁의 종류형(클래스) F 수익증권
- 투자기간 및 회수계획 : 투자기간 및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에 달성 등에 따라 회수될 예정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간이투자설명서
2. 투자설명

[붙임]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포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 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

	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